

대법원 2022. 3. 31 선고 2021다3066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AAA

피 고

BBB

변 론 종 결

판 결 선 고

2022. 3. 31

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6575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 법 제5조에

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